

부속서 I 주 해

1. 이 부속서의 당사국의 유보목록은 제 9.8 조(비합치 조치) 및 제 10.6 조(비합치 조치)에 따라,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그 당사국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.
 - 가. 제 9.3 조(내국민대우) 또는 제 10.2 조(내국민대우)
 - 나. 제 9.4 조(최혜국대우) 또는 제 10.3 조(최혜국대우)
 - 다. 제 10.5 조(현지주재)
 - 라. 제 9.6 조(고위경영진 및 이사회)
 - 마. 제 9.7 조(이행요건), 또는
 - 바. 제 10.4 조(시장접근)

2.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.
 - 가. **분야**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.
 - 나. **하위분야**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.
 - 다. **관련의무**는 제 3 항에 규정된 대로, 제 9.8 조제 1 항가호 및 제 10.6 조제 1 항가호에 따라 법,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 1 항에서 언급된 조항(들)을 명시한다.
 - 라. **정부수준¹⁾**은 유보된 조치(들)을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.
 - 마. **조치**는 유보된 법,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. **조치**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
 - 1) 이 협정 발효일에 개정·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.
그리고
 - 2)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. 그리고
 - 바. **유보내용**은 이 협정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를, 그리고 유보된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.

3. 유보항목을 해석함에 있어,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.

1)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경우, 그 조치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다.

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장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해석된다.

가. **조치** 요소가 **유보내용**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한정된 **조치**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. 그리고

나. **조치**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**조치**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**조치** 요소가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닌 한, **조치**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. 그렇게 결론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.

4. 제 9.8 조제 1 항가호 및 제 10.6 조제 1 항가호에 따라, 그리고 제 9.8 조제 1 항다호 및 제 10.6 조제 1 항다호를 조건으로, 유보항목의 **관련의무**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**조치** 요소에 명시된 법,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.

5.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시민권자, 영주권자,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, 제 10.2 조(내국민대우), 제 10.3 조(최혜국대우) 또는 제 10.5 조(현지주재)에 대하여 취하여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 9.3 조(내국민대우), 제 9.4 조(최혜국대우) 또는 제 9.7 조(이행요건)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.

6. 더 명확히 하기 위해, 현지주재(제 10.5 조)와 내국민 대우(제 10.2 조)는 별개의 규율이며 현지주재(제 10.5 조)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내국민 대우(제 10.2 조)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.

7. 대한민국의 **주세법**(법률 제 8837 호, 2008. 1. 9.) 및 그 하위 규정에 따라 주류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의 종류와 양에 대한 요건을 정할 수 있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가에 포함된,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 9.7 조(이행요건)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.